

의안번호	2212626
의 퇴 인	강대식 의원
회 답 일	2025.9.15.
추 계 번호	25B47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청년 연령을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상 15세 이상 29세(또는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기준 연령 변경
 -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 15세 이상 29세(또는 34세) 이하¹⁾
 - (개정: 법률에 명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개정안에 따라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29세(또는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이 변경되어 재정지출이 증감하거나 새로 편입된 연령 구간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화 중 지출증가분은 새로 편입될 연령 구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와 청년의 기준 연령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의 규모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 사업의 경우 현시점에서 추진 내용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화 중 지출감소분은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대상자(15~18세)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정지출의 감소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청년의 기준 연령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는 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7개로 이 중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1043-301),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1044-301),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해외취업지원(1051-304)이 이에 해당함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참고로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및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1051-306)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청년정책의 효과성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기준 연령 변화가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원대상 선정 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³⁾, ②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고보) 사업⁴⁾, ③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⁵⁾ 사업, ④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⁶⁾의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의 연령이 변경되므로 재정지출이 증감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대상자의 규모와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의 변경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재원	사업명(코드)	근거조항	연령기준	2024년 결산
1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 ①	15~34세 (군필자는 최대39세)	487,003
2	일반회계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1044-301)	§7 ①	15~34세 (군필자는 최대39세)	113,209
3	고용보험 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7 ①	15~34세 (군필자는 최대39세)	53,875
4	일반회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051-305) - 청년일경험지원	§8의2 ①·②	15~34세 (군필자는 최대39세)	169,167
5	일반회계	해외취업지원(1051-304)	§12 ①	15~34세	55,535
6	일반회계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051-306)	§3 ① §8의4 ①·② §16의2 ①	-	5,378
7	일반회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구 청년센터운영)(1032-30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 ③ §8의2 ①·② §8의3 ①·②	-	82,773

주: 사업리스트는 2024년 결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3) 청년 신규채용 장려를 위해 미래유망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채용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4)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정해진 금액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5) 중소기업 인력 mismatch 해소를 위하여 청년에게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와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6) 해외취업 활성화 및 취업 후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취업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